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7일, 이원택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상정, 소위심사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원택 의원)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8조제1항).

또한, 시·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18조제2항).

하지만, 최근 전국 연안해역에서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등 유어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채취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어업인은 야간 시간에도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잦아 지역 어촌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법률에 따른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보호·회복과 안전한 유어(遊漁) 행위의 촉진 및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 갈등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강화하고, 시·군·구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고려하여 안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강화하고, 시·군·구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고려하여 안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안 제18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시간·장소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시간, 장소,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으로 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u>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① ----- ----- ----- ----- ----- <u>수산자원의 보호 및 안전한 유어 활동</u>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시간·장소 등의 포획·채취 기준</u> ----- ----- ----- -----.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① ----- -----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시간, 장소,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u>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②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u>	② (개정안과 같음)

하 “시·도”라 한
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
로 포획·채취 기
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
로 포획·채취 기
준을 정하거나 변
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하 “시·도”라 한
다) 또는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
다)-----

- 그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

③ 시·도지사 또
는 시·군·구청장
은 -----

③ (개정안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④・⑤ (개정안과 같음) 부칙 ----- <u>1</u> <u>년</u> ----- -----.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산자원의 보호”를 “수산자원의 보호 및 안전한 유어 활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시간, 장소,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그 시·도의 조례”를 “그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u>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① ----- ----- ----- -----수산자원의 보호 및 안전한 유어 활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시간, 장소,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u> 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u>그 시·도의 조례</u> 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그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 -----
③ <u>시·도지사</u> 는 제2항에 따라	③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u>

